

아래 모델 철회 통지서(Model Notice of Withdrawal)는 주거 선택 공정 기회법(Fair Chance in Housing Act), N.J.S.A. 46:8-52부터 64(FCHA) 및 동반 규칙, N.J.A.C. 13:5에 정해진 주거 권리 보호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New Jersey 민권국(DCR)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모델 철회 통지서는 주거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델 철회 통지서:**

이 통지서는 [name of housing provider]가 [name of prospective tenant]에 대한 조건부 주거 제공 제안을 다음과 같은 형사상 유죄 판결(들)에 대한 이유로 철회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Name of housing provider]는 아래 항목과 관련하여 본 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조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a) 범죄(들)의 본질 및 심각성
- (b) 범죄(들)를 저지른 당시 신청자의 나이;
- (c) 범죄(들)가 얼마나 최근에 발생했는지 여부;
- (d) 범죄(들)가 있었던 이후 신청자가 정상 참작을 위해 제공한 모든 정보;
- (e) 만약 그러한 범죄(들)가 미래에 재발했을 경우, 그것이 다른 세입자나 건물의 안전에 미칠 영향; 및
- (f) 그러한 범죄(들)는 신청자가 세입자로 있었거나 임대했던 건물에서 발생했는지, 또는 그와 연관이 있었는지 여부

[Name of housing provider]는 본 신청자에 대한 조건부 주거 제공 제안을 철회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합법적이며 비차별적인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사유[identify with specificity the reason or reasons for withdrawing the conditional offer or taking the adverse housing action]:

---

---

---

---

---

---

---

---

신청자는 이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name of housing provider]에게 특정한 범죄 이력을 포함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존한 모든 정보의 사본을 제공해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Name of housing provider]는 시의적절한 요청을 받은 후 십(10)일 이내에 요청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FCHA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본인의 범죄 이력 면면에 대한 관련성과 정확성을 반박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이후 본인의 재할 상태와 선량한 행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상 참작 사실 또는 상황에 해당되는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name of housing provider]에게 FCHA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본인의 범죄 이력 면면에 대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을 증명하는 증거나 재할의 증거 또는 기타 정상 참작 요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면, [name of housing provider]는 그러한 정보를 검토하고 제공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재고하여, 30일 이내에 재고에 대한 결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name of housing provider]가 자신을 대신하여 범죄 이력 확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 또는 외부인/외부 단체를 활용했다면, [name of housing provider]는 그러한 업체 또는 외부인/외부 단체가 본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범죄 이력 확인 작업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만약 [name of housing provider]가 특정 범죄 이력에 대해 본 법률에 따라 고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범죄 이력을 공개함으로써 본 법률을 위반하여 조사 작업이 이루어진 질의서를 다른 업체 또는 외부인 또는 외부 단체로부터 받았다면, [name of housing provider]는 그러한 정보는 세입자 자격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성명서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하여 [name of housing provider]로부터 취해진 모든 조치는 FCHA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name of housing provider]의 소유주, 대리인, 직원 또는 지정인이 위의 요구 사항을 위반했다고 믿는다면, [www.NJCivilRights.gov](http://www.NJCivilRights.gov) 또는 1-866-405-3050으로 New Jersey 민권국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은 주장하는 차별적 행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DCR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민원을 제출했거나 FCHA 아래 보장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 것에 대해 잠재적 세입자에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DCR은 <https://www.nj.gov/oag/dcr/housing.html>, 에 몇 가지 공정한 주거 제공에 관한 팩트시트를 게시하고 있으며, 또한 다음 네(4) 개의 DCR 지역 사무소에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31 Clinton Street, 3rd Floor  
Newark, NJ 07102

5 Executive Campus  
Suite 107, Bldg. 5  
Cherry Hill, NJ 08002

1601 Atlantic Avenue, 6th Fl.  
Atlantic City, NJ 08401

140 East Front Street, 6th Floor  
Trenton, NJ 08625

이러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joag.gov/about/divisions-and-offices/division-on-civil-rights-home/fcha/>.

---

주거 제공자 서명

---

날짜

---

잠재적 세입자 서명

---

날짜